

첨부서류	1. 지정신청 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정기구에서 발급한 시험 및 교정기관의 적격성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ISO/IEC 17025) 인정서(이하 이 표에서 “인정서”라 한다) 나. 검사기관의 인력에 관한 사항(경력사항을 포함한다) 다. 검사 시설에 관한 사항(검사 시설의 평면도를 포함한다) 라. 검사 장비에 관한 사항(검사 장비의 배치도를 포함한다)	수수료 별도 표기
	2. 변경승인신청 가.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갱신 또는 변경된 인정서 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변경신고 가. 검사기관의 지정서 원본 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제2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등 (개명한 경우만 해당)	

처리기간 및 수수료				
신청 사항		처리기간	수수료	
			서면민원	전자민원
지정 신청		30일	19만원	17만원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1. 검사기관의 명칭	7일	없음	없음
	2. 검사기관의 소재지	14일	없음	없음
	3. 검사 분야	30일	없음	없음
지정사항 변경신고	1. 대표자	즉시	없음	없음
	2. 대표자 성명(개명한 경우만 해당)	즉시	없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필요시 현장조사)

→

결재

→

지정서 작성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